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2024. 11. 27.)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2025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24-140
- 나. 제출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4년 11월 15일(금)
-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4년 11월 18일(월)

2. 제출사유

마포구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대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철수)
 - 재단소개: 서울시 유일 금융·비금융 지원기관, 신용보증사업추진
- 나. 사업내용: 특별신용보증사업 추진
 -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다.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보증 공급이 폭증함에 따라 우리구의 출연금으로 운영하였던 특별신용 보증사업 보증 한도가 소진되어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추가 출연이 필요함

라. 출연금액: 10억원

-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25년 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 출연 금액 확정

4.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5.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出捐)에 대하여 마포구의회 의 결의를 얻고자 「지방재정법」 제 18조제3항¹⁾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었음.
- 신용보증재단 출연의 목적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이들의 운영자금 용자 시 은행에 대한 신용보증 재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결정하고 대위변제 충당을 위한 지불준비금으로 사용하게 됨.
- 마포구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도에 급격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의 막대한 영업피해에 따른 운영자금의 특별한 지원의 필요성에 기인하며, 코로나19 이후 신용보증 공급이 폭증함에 따라 우리구의 출연금으로 운영하였던 특별신용 보증사업 보증 한도가 소진되어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위하여 2025년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함.

※ 연도별 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단위: 억원)

2005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21년	2023년	2024년	합계
2	2	2	2	2	16	10	10	46

- 고금리·고물가 흐름과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²⁾,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업 자금 유통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자금 유통이 어려워 곤경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 동 출연(안)은 법령에 명시한 절차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의 목적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출연에 따른 특별보증의 대상, 보증 조건 및 지원우대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련부서 설명을 요한다 할 것임.

2) '문 닫을 결심' 자영업자 100만 그 이상... "폐업하고 싶어도 못해요"/ M이코노미 뉴스(2024.10.15.)
 "장사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전국 시도 70% 폐업건수 '눈물의 신기록'/헤럴드경제(2024.11.23.)

■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용자상환금 등
-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04.11.20, 개정 2011.3.17)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용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